**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주석 령 제61호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이 2016년 12월 25일의 중화인민공화국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시진핑

2016년 12월 25일

**목 차**

1. **총 칙**
2. **과세의거 및 의무납세액**
3. **조세감면**
4. **징수관리**
5. **부 칙**

**제1장 총 칙**

1. 환경을 보호 및 개선하고 오염물 배출을 줄이며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환경을 향해 직접적으로 과세대상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보호세 납세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이 법에서 과세대상 오염물이라 함은 이 법의 별표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 <과세대상 오염물 및 당량치표>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고체폐기물 및 소음을 지칭한다.
4.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오염물을 직접 환경에 배출한 상황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오염물의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5. 기업과 사업체, 기타 생산경영자가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오수집중처리장소,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소로 과세대상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6. 기업과 사업체, 기타 생산경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는 시설, 장소에 고체폐기물을 저장하거나 또는 그에서 고체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7.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도농 오수집중처리장소,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소가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환경에 과세대상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체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리함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기타 생산경영자는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환경보호세의 세목, 세액은 이 법에 첨부한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에 따라 집행한다.

과세대상 오염물과 수질오염물의 구체적 적용세액의 확정과 조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환경부담능력, 오염물 배출현황 및 사회경제 생태발전의 목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법의 별표 <환경호보세 세목세액표>에서 규정한 세액범위 내에서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하며, 아울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2장 과세의거 및 의무납세액**

1. 과세대상 오염물의 과세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2.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은 오염물 배출량으로 환산한 오염당량값에 따라 확정한다.
3.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은 오염물 배출량으로 환산한 오염당량값에 따라 확정한다.
4. 과세대상 고체폐기물은 고체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확정한다.
5. 과세대상 소음은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데시벨 수치에 따라 확정한다.
6.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수질오염물의 오염당량값은 해당 오염물의 배출량을 해당 오염물의 오염당량치로 나누어 계산한다. 각종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수질오염물의 당량치는 이 법의 별표 <과세대상 오염물 및 당량치표>에 따라 집행한다.
7. 각 배출구의 과세대상 대기오염물 또는 배출구가 없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을 오염당량값의 크고 작은 순서로 배열할 때 3위 안에 드는 오염물에 대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각 배출구의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은 이 법의 별표 <과세오염물 및 당량치표>에 따라 제1류 오염물과 기타 류의 수질오염물로 구분하며, 오염 당량값의 크고 작은 순서에 따라 제1류는 5위 안에 드는 오염물에 대해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기타 류의 오염물은 3위 안에 드는 오염물에 대해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오염물 배출 감소에 대한 특수 수요에 근거하여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는 동일 배출구 과세대상 오염물의 항목 수를 추가할 수 있되 동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전국인미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1.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수질오염물·고체폐기물의 배출량과 소음의 데시벨 수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2. 납세자가 국가의 규정과 모니터링 규범에 부합되는 오염물 자동 모니터링기기를 설치 및 사용하는 경우 오염물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라 계산한다.
3. 납세자가 오염물 자동 모니터링기기를 설치 및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측기구가 발행한 국가의 관련 규정 및 모니터링 규범에 부합되는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라 계산한다.
4. 배출하는 오염물의 종류가 다양한 등 원인으로 인해 모니터링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가 규정한 오염배출계수, 물질수지 방법으로 계산한다.
5. 본 조 제(1)호 ~ 제(3)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성, 자치구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가 규정한 추출 측정 방법으로 산정한다.
6. 환경보호세의 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7. 과세대상 대기오염물의 과세액은 오염당량값에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8.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의 과세액은 오염당량값에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9. 과세대상 고체폐기물의 과세액은 고체폐기물 배출량에 구체적인 적용 세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10. 과세대상 소음의 과세액은 국가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한 데시벨 수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적용 세액으로 한다.

**제3장 조세감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세를 당분간 면제한다.
2. 농업생산(규모화 양식(養殖) 제외)으로 과세대상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3. 자동차, 기관차, 비도로 이동기계, 선박 및 항공기 등 이동 오염원이 과세대상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4.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도시 오수집중처리장소, 생활쓰레기집중처리장소가 상응하게 배출하는 과세대상 오염물이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배출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고체폐기물이 국가 또는 지방의 환경보호 표준에 부합되는 경우
6. 국무원이 세금 면제를 승인한 기타의 경우.

전 항 제(5)호의 면세 규정은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한다.

1. 납세자가 배출하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 또는 수질오염물의 농도가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 기준의 30% 미만인 경우 75%의 환경보호세를 납부하며, 납세자가 배출하는 과세대상 대기오염물 또는 수질오염물의 농도가 국가 또는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 배출 기준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50%의 환경보호세를 납부한다.

**제4장 징수관리**

1. 환경보호세는 세무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과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관리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이 법과 환경보호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에 대한 감측관리를 담당한다.

현(縣)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세무기관, 환경보호주관부서와 기타 관련 기관의 업무분장 및 협력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환경보호세 징수관리를 강화하며 세금이 적시 전액 국고로 납입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환경보호주관부서와 세무기관은 조세 정보 공유 플랫폼과 업무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오염물 배출업체의 오염물 배출허가, 오염물 배출 데이터, 환경법 위반기록 및 행정처벌 기록 등 환경보호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세무기간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세금 국고 상납, 감면세액, 체납세액 및 리스크 사항 등 환경보호세와 연관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는 납세자가 과세대상 오염물을 배출한 당일에 발생한다.
2. 납세자는 과세대상 오염물 배출지의 세무기관에 환경보호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환경보호세는 월 단위로 계산하여 분기별로 신고 및 납부한다. 고정 기한에 따른 계산 및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회(次)별로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가 납세신고를 할 시에는 세무기관에 배출한 과세대상 오염물의 종류와 물량, 대기오염물과 수질오염물의 농도, 그리고 세무기관이 실제 필요에 따라 납세자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납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자가 분기별로 납세신고를 하는 경우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별 납세신고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납세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법에 따라 성실하게 납세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의 진실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1.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데이터·자료와 환경보호주관부서로부터 전달받은 관련 데이터·자료를 비교·대조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납세신고 데이터·자료에 이상이 있다거나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서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세무기관으로부터 데이터·자료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세무기관에 재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재검토를 거친 데이터·자료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 이 법 제10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세무기관이 환경보호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오염물 배출 종류, 배출량 및 과세액을 결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으로 과세대상 대기오염물, 수질오염물 또는 고체폐기물을 배출하는 해양 공사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구체적인 환경보호세 신고·납부 방법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국무원 해양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규정한다.
3. 납세자와 세무기관, 환경보호주관부서 및 그 업무인력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및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묻는다.
4.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건설에 대한 투입을 증가하도록 납세자를 권장하고 납세자의 오염물 자동모니터링설비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자금과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부 칙**

1. 이 법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2. 오염당량이라 함은, 오염물 또는 오염물 배출 활동의 환경 유해성과 처리기술의 경제성에 근거하여 각 오염물의 환경오염을 평가하는 종합지표 또는 계량단위를 지칭한다. 동일 매개물 동일 오염당량의 각 오염물은 그 오염성이 기본적으로 상당하다.
3. 오염배출계수라 함은, 정상적인 기술·경제 및 관리 조건하에서 한 단위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배출하여야 하는 오염물 량의 평균통계치를 지칭한다.
4. 물질수지라 함은 물질 질량보존의 법칙에 근거하여 생산 과정에 사용된 원료, 생산된 제품과 발생한 폐기물 등을 측정 계산하는 일종의 방법을 지칭한다.
5. 환경에 과세대상 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는 기업과 사업체, 기타 생산경영자는 이 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납부하는 외에 그로 인해 초래된 손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하며 오염배출비는 더 이상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

|  |  |  |  |  |
| --- | --- | --- | --- | --- |
| **세 목** | | **과세단위** | **세 액** | **비 고** |
| 대기오염물 | | 오염당량당 | 1.2~12위안 |  |
| 수질오염물 | | 오염당량당 | 1.4~14위안 |  |
| 고  체  폐  기  물 | 매간석 | 톤당 | 5위안 |  |
| 미광(尾鑛) | 톤당 | 15위안 |
| 위험폐기물 | 톤당 | 1000위안 |
| 제련 잔여물, 분말연탄재, 광재, 기타 고체폐기물 (반고체·액체 폐기물 포함) | 톤당 | 25위안 |
| 소음 | 공업 소음 | 기준치 1—3데시벨 초과 | 350위안/월 | 1. 한 업체의 경계선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이 발생되는 위치가 두개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위치의 기준 초과 소음 레벨에 근거하여 과세액을 계산하며, 100미터를 초과하는 경계선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이 발생되는 위치가 두개 이상인 경우 두개 업체로 간주하여 과세액을 계산한다.  2. 한 업체에 두개 이상의 작업현장이 있을 경우 각각 별도로 과세액을 계산하여 합병징수한다.  3. 주(晝)·야(夜) 모두 환경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晝)·야(夜) 각각 별도로 과세액을 계산하여 누계징수한다.  4. 1개월 내에 기준 초과 일수가 15일 미만인 소음원의 경우 반감하여 과세액을 계산한다.  5. 공장 경계선의 기준 초과 소음이 야간에 빈번히 돌발하거나 야간에 간혹적으로 돌발하는 경우 등가소음레벨 및 최고소음 두 지표 중 데시벨 수치가 높은 지표를 택하여 과세액을 계산한다. |
| 기준치 4—6데시벨 초과 | 700위안/월 |
| 기준치 7—9데시벨 초과 | 1,400위안/월 |
| 기준치 10—12데시벨 초과 | 2,800위안/월 |
| 기준치 13—15데시벨 초과 | 5,600위안/월 |
| 기준치 16데시벨 초과 | 11,200위안/월 |

별표 2 :

**과세대상 오염물 및 당량치표**

* 1. **제1류 수질오염물 오염당량치**

|  |  |
| --- | --- |
| **오염물** | **오염당량치(kg)** |
| 1. 총수은 | 0.0005 |
| 2. 총카드뮴 | 0.005 |
| 3. 총크롬 | 0.04 |
| 4. 6가크롬 | 0.02 |
| 5. 총비소 | 0.02 |
| 6. 총납 | 0.025 |
| 7. 총니켈 | 0.025 |
| 8. 벤조피렌 | 0.0000003 |
| 9. 총베릴륨 | 0.01 |
| 10. 총은 | 0.02 |

* 1. **제2류 수질오염물 오염당량치**

|  |  |  |
| --- | --- | --- |
| **오염물** | **오염당량치(kg)** | **비 고** |
| 11. 부유물(SS) | 4 |  |
| 12. 생물적 산소 요구량(BOD5) | 0.5 | 동일 배출구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 생물적 산소 요구량 및 총유기탄소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함. |
| 13.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cr) | 1 |
| 14. 총유기탄소(TOC) | 0.49 |
| 15. 석유류 | 0.1 |  |
| 16. 동·식물유 | 0.16 |  |
| 17. 휘발성 페놀 | 0.08 |  |
| 18. 총사이안화물 | 0.05 |  |
| 19. 황화물 | 0.125 |  |
| 20. 암모니아 질소 | 0.8 |  |
| 21. 불화물 | 0.5 |  |
| 22. 포름알데히드 | 0.125 |  |
| 23. 아닐린류 | 0.2 |  |
| 24. 니트로벤젠류 | 0.2 |  |
| 25. 음이온 계면활성제(LAS) | 0.2 |  |
| 26. 총구리 | 0.1 |  |
| 27. 총아연 | 0.2 |  |
| 28. 총망간 | 0.2 |  |
| 29. 채색 현상제(CD－2) | 0.2 |  |
| 30. 총인 | 0.25 |  |
| 31. 단원소 인 (P로 표시) | 0.05 |  |
| 32. 유기인계 농약(P로 표시) | 0.05 |  |
| 33. 로고(rogor) | 0.05 |  |
| 34. 메틸파라티온 | 0.05 |  |
| 35. 말라티온 | 0.05 |  |
| 36. 파라티온 | 0.05 |  |
| 37. 펜타클로로페널 및 펜타클로로페놀산 나트륨(펜타클로로페널로 표시) | 0.25 |  |
| 38. 클로로포름 | 0.04 |  |
| 39. 흡착가능 유기할로겐화물(AOX)(Cl로 표시) | 0.25 |  |
| 40. 사염화탄소 | 0.04 |  |
| 41. 트라이클로로에틸렌 | 0.04 |  |
| 4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4 |  |
| 43. 벤젠 | 0.02 |  |
| 44. 톨루엔 | 0.02 |  |
| 45. 에틸벤젠 | 0.02 |  |
| 46. 오르토자일렌 | 0.02 |  |
| 47. 파라자일렌 | 0.02 |  |
| 48. 메타자일렌 | 0.02 |  |
| 49. 클로로벤젠 | 0.02 |  |
| 50. 오르토디클로로벤젠 | 0.02 |  |
| 51. 패러디클로로벤젠 | 0.02 |  |
| 52. p-니트로클로로벤젠 | 0.02 |  |
| 53. 2,4-디니트로클로로벤젠 | 0.02 |  |
| 54. 페놀 | 0.02 |  |
| 55. 메타크레졸 | 0.02 |  |
| 56. 2,4-다이클로로페놀 | 0.02 |  |
| 57. 2,4,6-트리클로로페놀 | 0.02 |  |
| 58. 프탈산디부틸 | 0.02 |  |
| 59. 프탈산다이옥틸 | 0.02 |  |
| 60. 아크릴로니트릴 | 0.125 |  |
| 61. 총셀레늄 | 0.02 |  |

* 1. **PH치, 색도, 대장균군수, 잔류염소량의 수질오염물 오염당량치**

|  |  |  |  |
| --- | --- | --- | --- |
| **오염물** | | **오염당량치** | **비 고** |
| 1. PH치 | 1. 0-1, 13-14 2. 1-2, 12-13 3. 2-3, 11-12 4. 3-4, 10-11 5. 4-5, 9-10 6. 5-6 | 0.06톤 오수  0.125톤 오수  0.25톤 오수  0.5톤 오수  1톤 오수  5톤 오수 | PH5-6은 5 이상, 6 미만을 의미하고; PH9-10은 9 이상, 10 미만을 의미하며 나머지도 이러한 방식으로 유추한다. |
| 2. 색도 | | 5톤 수·배 |  |
| 3. 대장균군수(기준 초과) | | 3.3톤 오수 | 대장균군수와 잔류염소량은 둘 중 하나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 4. 잔류염소량(염소를 이용하여 소독하는 병원의 폐수) | | 3.3톤 오수 |

* 1. **가축·가금업, 소형기업 및 3차산업의 수질오염물 오염당량치**

(이 표는 실제 감측이 불가능하거나 물질수지의 방식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가축·가금업, 소형기업 및 3차산업 등 소형 오염배출업체의 수질오염물 오염당량값에만 적용함)

|  |  |  |  |
| --- | --- | --- | --- |
| 유형 | | 오염당량치 |  |
| 가축·가금 사육장 | 1. 소 | 0.1마리 | 사육두수가 소 50마리, 돼지 500마리, 닭·오리 등 5,000마리를 초과하는 가축·가금 사육장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 2. 돼지 | 1마리 |
| 3. 닭·오리 등 가금 | 30마리 |
| 4. 소형기업 | | 1.8톤 오수 |  |
| 5. 요식·오락·서비스업 | | 0.5톤 오수 |  |
| 6. 병원 | 소독 | 0.14침대 | 병원의 침대 수가 2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 표에 따라 오염당량을 계산한다. |
| 2.8톤 오수 |
| 비소독 | 0.07침대 |
| 1.4톤 오수 |

* 1. **대기오염물의 오염당량치**

|  |  |
| --- | --- |
| **오염물** | **오염당량치(kg)** |
| 1. 이산화유황 | 0.95 |
| 2. 질소산화물 | 0.95 |
| 3. 일산화탄소 | 16.7 |
| 4. 염소가스 | 0.34 |
| 5. 염화수소 | 10.75 |
| 6. 불화물 | 0.87 |
| 7. 시안화수소 | 0.005 |
| 8. 황산 미스트 | 0.6 |
| 9. 크롬산 미스트 | 0.0007 |
| 10. 수은 및 수은 화합물 | 0.0001 |
| 11. 일반 분진 | 4 |
| 12. 석면 분진 | 0.53 |
| 13. 유리솜 분진 | 2.13 |
| 14. 카본블랙 분진 | 0.59 |
| 15. 납 및 납 화합물 | 0.02 |
| 16.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 0.03 |
| 17. 베릴륨 및 베릴륨 화합물 | 0.0004 |
| 18. 니켈 및 니켈 화합물 | 0.13 |
| 19. 주석 및 주석 화합물 | 0.27 |
| 20. 검댕 | 2.18 |
| 21. 벤젠 | 0.05 |
| 22. 톨루엔 | 0.18 |
| 23. 자일랜 | 0.27 |
| 24. 벤조아필렌 | 0.000002 |
| 25. 포름알데히드 | 0.09 |
| 26. 아세트알데히드 | 0.45 |
| 27. 아크릴알데히드 | 0.06 |
| 28. 메탄올 | 0.67 |
| 29. 페놀류 | 0.35 |
| 30. 아스팔트 증기 | 0.19 |
| 31. 아닐린류 | 0.21 |
| 32. 클로로벤젠류 | 0.72 |
| 33. 니트로벤젠 | 0.17 |
| 34. 아크릴로니트릴 | 0.22 |
| 35. 클로로에틸렌 | 0.55 |
| 36. 포스겐 | 0.04 |
| 37. 황화수소 | 0.29 |
| 38. 암모니아 | 9.09 |
| 39. 트라이메틸아민 | 0.32 |
| 40. 메틸메르캅탄 | 0.04 |
| 41. 디메틸설파이드 | 0.28 |
| 42. 디메틸디설파이드 | 0.28 |
| 43. 스티렌 | 25 |
| 44. 이황화탄소 | 20 |